

##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제1항 (舊.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)에 따라 행정처분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30일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자

| 당사자(건설기술인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분의 원인사실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성명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김*민<br>(71.**.28.) | 충남 홍성군<br>(이하생략)  | 업무정지 4.5개월<br>(2024.5.7.~2024.9.22.) | 경력 거짓신고  |
| 권*경<br>(72.**.10.) | 세종특별자치시<br>(이하생략) | 업무정지 4.5개월<br>(2024.5.7.~2024.9.22.) | 경력 거짓신고  |

### 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제1항 제1호 (舊.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(舊.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)

### 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기 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담당자(☎ 042-670-32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